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09321 판결 [주식 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5794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0932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준섭

변론 종결 2019. 6. 20.

판결 선고 2019. 7. 11.

제 1 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합40597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그 중 399,997,000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244,925원 및 그 중 399,997,000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2)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피고는 'F은 C에 대하여 업무정상화와 관련한 공문을 송부하였을 뿐이므로 C와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이관한 이후에도 수익배분 약정 등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업 관련 기술 이관 경위 등에 비추어 C와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제3자와의 '분쟁'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의 예시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운영자금 고갈 등으로 직원들이 일괄 퇴사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기술 일체를 F에게 이관한 이상 C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스스로 제1심에서는 제3자와의 분쟁으로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원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피고 2018.5. 17.자 준비서면 참조3))]"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계약상 근거는 없다"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에서 도 계속해서 이 사건 인수계약 제5조 등을 들어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 사유 발생 당시 C의 최대주주 지위에 있어야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에 따라 주식매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이 사건 인수계약의 해당 조문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 사유 발생 당시 C의 최대주주 지위에 있어야만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에 따라 주식매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C가 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이관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기술의 이관은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을 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73914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술 이관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관용, 판사 공도일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일(2017. 7. 15.)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제1심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위와 같은 취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아울러 피고의 신청으로 제1심에서 증언한 C의 직원 G도 "일단 사태가 이렇게 되어서 결국 저희 솔루션이 날라 갔는데, 사실C라는 회사는 없어졌고, 제가 몇 년 동안 공들였던 프로젝트들도 다 남의 것이 되었는데 ..."라고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